

인권(人權)

자연과학대학 화학부 김 호 정

1. 세계인권선언

1948년 12월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UN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世界人權宣言,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이하 UDHR라 함)은 인권의 대헌장(大憲章)으로써 세계인의 통념이 되고 있다⁽¹⁾.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UDHR을 인류 양심의 최고의 표현이라고 찬양하였다. 2010년 현재 375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있다. 전문(前文)과 총 30조의 본문으로 되어있는 UDHR은 그 자체는 “선언”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국제사회에서 인권에 관한 구속력이 있는 법(法)이나 협약(協約)의 표본으로 되어있다. UDHR은 전문(前文)에서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천부(天賦)의 존엄성(尊嚴性)과 양보할 수 없는 평등한 권리(權利)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自由), 정의(正義) 및 평화(平和)의 기초가 되며...”라고 말함으로써 인권이 인류에게 지상(至上)의 가치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본문 제1조에서는 “모든 인간은 태어났을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며,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 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2. 국제인권협약

UDHR은 두 개의 구속력이 있는 국제협약의 모체(母體)가 되었다. 그들은

- (1) 공민권(公民權)과 참정권(參政權)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하 ICCPR로 약기)과
- (2)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al,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이하 ICESCR로 약기)

이다⁽²⁾. UDHR의 본문 1~21조는 ICCPR에, 본문 22~30조는 ICESCR에 각각 대응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

ICCPR에서는 사람의 자결권(自決權)을 명시하고 (제1조), 생명에 대한 권리의 인정 (제6조), 고문(拷問)의 금지 (제7조), 노예(奴隸)와 예속(隸屬)상태의 금지 (제8조), 신체의 자유(liberty)와

안전(security of person)에 대한 권리 (제9조), 구속된 사람이 인도적 처우를 받을 권리 (제10조), 이동과 거주지 선택의 자유 (제12조), 법적 존재인 사람으로 인정받을 권리 (제16조), 사생활(私生活)에 대한 권리 (제17조), 사상-양심-종교-믿음의 자유 (제18조), 견해(opinion)와 표현의 자유 (제19조), 전쟁의 선전(propaganda)과 증오(憎惡)의 창도(唱導, advocacy)의 금지 (제20조), 집회의 자유 (제21조), 결사의 자유 (제22조), 투표(投票)하고, 선출되며 또한 공무(公務)에 참여하는 권리 (제25조), 법 앞에 평등하며 또한 평등하게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 (제26조), 소수민족이 보호받을 권리 (제27조)들을 국가(state party)가 인정하고 존중하도록 되어있다. ICCPR의 제25조는 제19조 제21조 및 제22조와 연관되어 있고, UDHR의 제21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UDHR의 제21조는

- (1)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된 대표를 통하여 자국의 정부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2) 모든 사람은 자국에서 동등한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 (3) 국민의 의사가 정부권능의 기반이다. 이러한 의사(will)는 보통선거(universal suffrage)와 평등선거(equal suffrage) 방식이며, 비밀(secret ballot) 또는 이에 상당(相當)한 자유 투표절차에 의한 정기적(定期的, periodic)이고 진정(眞正, genuine)한 선거에 의하여 표현된다.

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는 모든 통치 권력의 근원은 국민의 뜻이라는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정신에 따라서, 법이 정한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치안이 유지된 상태에서, 사상-양심-표현-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된 가운데, 자유롭게 입후보한 여러 후보자들이 정견(政見)을 발표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투표의 비밀이 보장된 투표소에 나가서 성인 모두가 한 표를 던진다는 것을 뜻한다. 특정 정책이나 중요 국정사항을 묻는 국민투표(referendum)도 같은 방식을 거친다. 앞으로 이러한 방식을 “공정자유선거(公正自由選舉)” 또는 “공정자유국민투표”라고 부르기로 한다. 그리고 공정자유선거가 아닌 선거를 부정선거(不正選舉)라고 부르기로 한다. 이는 민주주의 정치의 기본 필수 과정인 공정자유선거나 공정자유국민투표를 “양보할 수 없는 인간 천부(天賦)의 권리”로서 정의되는 “인권”의 테두리 안에 포함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2장의 제1조~제37조에는 상술한 UDHR, ICCPR 및 ICESCR에 기재(記載)된 모든 인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대한민국은 1990년4월10일에 두 국제협약 ICCPR와 ICESCR를 비준(批准)하였다. 한반도의 북반부를 점유하고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1981년 9월 14일에 두 협약을 비준(批准)하였다. 즉, 남북이 모두 국제인권협약의 체약국(締約國, state party)이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강조하는 ICCPR와는 대조적으로 ICESCR는 평등한 존재인 사람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증진(增進)시켜야 할 국민의 권리가 담겨 있다. 제6조 제7조 제8조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자유의지로 선택한 노동으로 본인과 가족의 생계(生計)를 세우는 권리를 인정하고, 체약국(締約國)은 이를 돕고, 공정하고 양호한 노동조건을 보장하며, 그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하는 권리와 법의 테두리 내에서의 파업을 인정하여야 한다. 체약국은 사회보험을 포함하는 사회보장을 노동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제9조). 체약국은 모든 이가 의식주(衣食住) 면에서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고, 생활조건에 지속적인 향상을 추구하는 권리를 인정하여야 한다(제11조). 체약국은 모든 이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수준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도록 도와야 한다(제12조). 모든 이에게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주되, 보통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며 무상으로 제공한다(제13조, 제14조). 체약국은 모든 이의 문화생활 참여 추구의 권리를 인정하여야 한다(제15조). 여기서 특히 주목할 조항은 제11조로서, 체약국은 어떤 경우라도 국민의 어느 누구도 굶주리고, 헐벗고, 추위와 눈과 비를 피할 집이 없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1932~1933년에, 옛 소련의 스탈린은 집단농장 제도(制度)에 비협조적인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지역봉쇄와 곡물의 수탈(收奪)로 수백만 명을 아사(餓死)시킨 일이 있다. 1990년대 후반에는 선군(先軍)정책을 쓰는 북한 땅에서 주민 약 200만이 아사(餓死)하였다⁶⁾. 북한 정권은 준수(遵守)하겠다고 약속하며 비준한 국제협약 ICESCR을 위반한 것이다.

러시아 혁명 전인 1900년, 황제(Tsar)인 니콜라스 2세가 절대 권력으로 통치하던 러시아제국에는 총 인구 128,000,000명에 귀족(nobility)이 1,800,000명 있었고, 총 인구의 85%를 차지하는 농민(農民, peasant)과 하루 11시간을 일하는 2% 미만의 공장노동자(industry worker)가 있었다.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귀족에 비하면 농민의 생활은 비참하였다. 공장노동자는 일의 내용이 대부분 육체노동이었다. 따라서 지배계급인 소수의 귀족에 비하여, 피지배계급에 속하며 총 인구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낫(sickle)과 망치(hammer)로 상징되는) 농민과 공장노동자는 후일 1917년 볼셰비키 공산혁명의 주역이 되었다.

2010년 1월 현재 총 인구 약 5,000만의 대한민국에서 경제활동 인구는 약 2,470만이고 이 중에 취업자 총 수는 2,350만이다. 농업(임업-어업 포함) 취업자는 150만(6.1%), 제조업 취업자는 390만(16.6%), 건설업 취업자는 170만(7.2%)이다. 취업자 전체의 30%(6.1%+16.6%+7.2%) 미만이 소위 노동자-농민이다⁶⁾. 즉, 이들은 우리 국민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존재가 아니다. 또한 이들은 모두가 낫과 망치로 상징되는 육체노동자도 아니다. 3D(difficult, dirty and dangerous)업종과 같은 단순노동은 젊은이의 기피 대상이며, 2009년 현재 농가 경영주의 88%가 50세 이상의 농부이다. 컴퓨터-로봇-제조기계-건설용장비-농업용장비 등이 생산성이 낮은 육체노동인력을 대치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로 육체노동을 하는 노동자와 농부는 극히 소수(少數)에 불과하다.

국가는 경제적 약자의 생존을 보호하여야 한다. 그렇다고 성장을 멈추어서 국제사회에서의 경쟁에 뒤쳐져서는 안 된다. 1인당 평균 GDP가 높고, 소득의 분배가 잘 되어서 Gini 계수가 작고, 사회보장제도가 발달된 나라는 ICESCR이 뜻하는 바람직한 나라이다(표 1). 대한민국은 일본과 독일에는 못 미치지만, 핵보유국가인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보다도, 소득에 비해서 부(富)의 분배가 비교적 골고루 되어있는 나라이다. 사람들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2분하는 것은 옳지 않다. 평등을 구호로 내세워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하였고, ICESCR의 제정(制定)에 앞장섰던 구 공산국가인 러시아나 중국까지도 1인당 GDP가 낮으면서 소득의 양극화(兩極化)는 더 심각하다. 비록 통계자료는 없으나, 충성도에 따라 분류되는 세습신분제도 하에서 직업선택-교육기회-의료시혜-식량배급 등이 차별화되는 불평등 사회 북한에서의 소득의 양극화는 자명(自明)하다.

표 1. Gini 소득분배 계수와 1인당 GDP(ppp)

나 라	일본	독일	한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	미국	중국	비고
Gini 계수*	24.9	28.3	31.6	32.7	36	39.9	40.8	46.9	
1인당GDP(ppp)**	34	36	28	34	35	16	47	6	(us\$1000)

*UNDP(2008) **World Bank(2008)

3. 인권상태의 계량화와 나라별 순위

1941년 미국에 설립된 비정부기관(NGO)인 Freedom House는 그의 설립 취지(趣旨)인 Mission Statement를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Freedom House는 독립된 비정부기구로서 세계에서 자유의 신장(伸張)을 후원한다. 자유는, 국민에게 책임을 지며 법치(法治)가 실천되며 표현-결사-민음의 자유와 소수민족과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적 정치체제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자유는 궁극적으로는 헌신적이고 용감한 남녀 사람들의 행동에 의해서 얻어진다. 우리는 자유가 억압받거나 위협받는 사회에서 비폭력적인 시민들의 자발적 행동을 지지하며,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되겠다는 권리에 도전하는 생각이나 세력에 반대한다. Freedom House는 분석, 선전과 행동을 통해서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를 성취하는데 촉매 역할을 한다.

Freedom House의 중요한 업적의 하나가 상술한 UN의 세계인권선언(UDHR)과 국제인권협약 ICCPR에 기재(記載)되고 정의(定義)된 인권상태를 상세하게 연구 조사하여 계량화하는 것이다.

매년 한번 “Freedom in the World”라는 이름으로 평점(評點)과 더불어 아래에 정의한 (가칭) 인권지표(人權指標)를 발표하는 것이다⁽⁴⁾. 구체적으로는, 사람이 지닌 천부(天賦)의 권리와 자유를

- (1) 정치적 권리(political rights, PR)
 - A. 선거 절차(Electoral Process)
 - B. 다당제(多黨制)와 정치 참여(Political Pluralism and Participation)
 - C. 정부 기능의 발휘(Functioning of Government)
- (2) 시민적 자유(Civil Liberties, CL)
 - D. 표현과 믿음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 and Belief)
 - E. 집회 결사의 권리(Association and Organizational Rights)
 - F. 법치(法治)(Rule of Law)
 - G. 자결(自決)과 개인의 권리(Personal Autonomy and Individual Rights)

의 여러 항목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즉 A-G의 세목(細目)을 점수화해서 얻은 총점을 기준으로 해서 1~7의 값을 지닌 (가칭) 인권지표를 정의하였다. Freedom House는 인권지표가 1~2.5인 나라를 Free, 3~5인 나라를 Partly Free, 5.5~7의 나라를 Not Free라고 분류하였다.

2008년의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의 인권지표는 1.0이고 한국, 일본, 이탈리아는 1.5이다. 즉 모두 Free의 국가들이다. 북한, 미얀마, 쿠바,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7.0을 받았다. 모두 Not Free의 국가들이다. 즉 이들 8개국은 조사대상국 193개 나라들 중에 인권상태가 186위~193위의 나라라는 것이다. 그런데 세목(細目) 점수 차에 따라 이들 8개국을 다시 서열화하면 북한이 최하점을 받아서 193위가 된다. 북한은 국제협약을 어김으로써 거짓말을 하였으며, 인권상태가 세계에서 최악의 나라라고 판정을 받았을 뿐 아니라, 국제공식기구인 UN에서 “ICCPR의 체약국이면서 소정(所定)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고 총회 결의 61/174호(2006/12/19)로 공식적으로 경고까지 받았다.

4. 민주주의의 계량화와 민주주의 체제의 특징

‘민주주의’라는 단어만큼 모든 사람이 제멋대로 사용하는 것은 드물다. 인간의 평등성을 인정하여 흑인 노예를 해방시키고자, 백인들이 서로 싸운 미국의 남북전쟁에서 결정적 승리를 거둔, 북군의 링컨 대통령은 1853년 11월 19일 격전지였던 게티스버그에서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는 지구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ever perish from the earth.)’라고 민주주의를 정의하고

민주주의 정부의 영구불멸(永久不滅)성을 믿는다는 연설을 하였다.

대한민국 현행 헌법 제1장의 제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다. 즉 국민이 피통치자이면서 동시에 통치자라는 것이다. 제2장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로 되어 있으며, 제11조~제37조에 국민의 자유권, 평등권, 생존권, 참정권, 청구권 등을 보장하고 있다. UDHR와 두 협약 ICCPR와 ICESCR에 있는 모든 내용이 우리 헌법의 제2장에 그대로 들어 있다.

김일성-김정일 부자(父子)가 대를 이어 북한 땅에서 60년간 군림(君臨)하여 온 소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호에도 ‘민주주의’라는 글자가 들어있다. 1988년에 개정된 북한 헌법은 그 서문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 령도 밑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며...’라고 하였으며, 제11조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조선로동당의 10계명(戒命)인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원칙”에는, 그 제4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교시(敎示) 집행에서 무조건성(無條件性)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즉 헌법 위에 로동당이 있고, 로동당 위에 김일성의 교시가 있다. 즉 법치국가가 아니다. 법치를 하지 않는 나라는 민주국가가 아니다.

영국의 경제전문지인 Economist는 ‘Economist Intelligence Unit's Democracy Index’라는 민주주의지표를 만들어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성숙도를 계량화하여서 발표하였다⁽⁶⁾. 이 지표 작성에서 고려한 요점들은

- (1) 선거 절차와 복수정당제(複數政黨制)(electoral process and pluralism)
- (2) 시민적 자유(civil liberties)
- (3) 정부의 기능 발휘(functioning of government)
- (4) 시민의 정치 참여와 정치 문화(political participation and political culture)

이었다. 이들 판단기준은 인권이 민주주의의 필요조건(necessary condition)임을 뜻한다. 2008년에는 세계 167개 국가가 조사 대상이었고, 각국의 지표 값(10점 만점)과 국가 순위가 발표되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지표가 8.01(Full Democracy)로서 28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지표가 0.86 (Authoritarian Regime)에 순위는 167개 국가 중 167위이었다. 즉 김일성-김정일 정권은 최악의 독재정권임을 뜻한다.

5. 유럽연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총 27개 유럽 국가들의 경제-정치의 공동체인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로 약기)은 총 인구가 5억으로서 세계 총 인구의 8% 정도이다. 그런데 2008년에 GDP(ppp)는 세계의 22%를, GDP(nominal)은 세계의 30%를 차지하였다⁽⁷⁾. 즉, 어느 모로나 성공적인 다(多)민족 다(多)언어의 다(多)국가 공동체이다. 회원국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서로의 국경을 자유롭게 넘어서, 사람, 물자(物資), 서비스 및 자본이 이동하게 하여 번영을 향한 시너지(synergy) 효과를 보고 있다. EU에 가입하려는 국가는 코펜하겐 기준(Copenhagen criteria)⁽⁸⁾ 즉,

- (1) 유럽에 소재(所在)하고,
- (2) 공동체 내에서 경쟁에 견딜 수 있는 시장경제 체제와,
- (3) 인권존중과 법치(法治)에 기초를 둔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유지하며,
- (4) 소수민족 성원의 정체성을 보호(保護)한다.

의 4개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EU회원국들은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ECHR로 약기)을 반드시 비준하여서 평화공존의 의지를 천명하고 또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 ECHR의 조목들은 UN의 세계인권선언이나 상술한 ICCPR와 거의 동일한 내용이다. 실제로 EU 회원국 27개국 중 22개국의 (앞 절에서 정의된 Freedom House의) 인권지표가 1.0이며, 라트비아,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3개국은 1.5, 구소련의 위성국가였던 두 나라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는 2.0이다. 즉 회원국 모두가 인권 모범생의 나라 'Free country'이다. 그리고 회원국 모두가 ICCPR를 비준한 나라들이다. 즉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한 나라들이다.

회원국 모두가 대의민주주의(代議民主主義, representative democracy) 국가들이다. 실제로 전술한 민주주의지표 값이 (10점 만점에) 9.88로서 총 167개 조사대상국 중 제1위인 스웨덴을 위시하여, 7.02로서 세계 제52위인 불가리아에 이르기까지 모두 모범적 민주국가이다.

전쟁-대량학살-대량아사로 점철(點綴)된 역사의 유럽에서, 27개국이 성공적인 경제적-정치적 공동체를 만들어서 평화 공존(共存)과 공영(共榮)을 지향(志向)할 수 있게 된 것은, 과거의 전제(專制)군주국가와 독재국가들이, 모두 인권을 존중하는 자유 시장 경제체제의 민주주의 국가들로 전환(轉換)되었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해진 것이다.

실제로 R. J. Rummel은 역사적 사실의 통계를 통해서, 전쟁-대량학살-대량아사는 독재국가만의 공통적 속성(屬性)임을 밝혀냈다⁽⁹⁾. 반대로 민주국가에서는 굶어죽는 사람이 없고, 민주국가끼리는 서로 적대행위나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표 2, 표 3 참조). 독재 권력이 자행한 대학살(democide)의 통계는 지면상 생략(省略)하였으나, 결론은 민주국가는 양민을 대량으로 살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북한에서 1948~1987년에 정치적 학살로 약 160만이 희생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⁹⁾, ⁽¹⁰⁾. 또 김일성이 일으킨 6.25사변에서 우리 민족 200만 이상이 죽었다고 대영백과사전은 기록하고 있다⁽¹¹⁾.

표 2. 20세기 아사(餓死)자 총수

인권보장여부	Free	Partly Free	Unfree	식민지	총수
나라의 수	0	15	30	16	60
아사자수(000)	0	14,374	> 60,080	> 12,115	> 86,569

*1974~1976년에 아사자를 낸 Angola는 Unfree국가와 식민지국가에 중복 기입

표 3. 1816~1991년에 있었던 전쟁들의 수

교전국 분류	전쟁들의 수*
민주주의 국가 대 민주주의 국가	0
민주주의 국가 대 비민주주의 국가	155
비민주주의 국가 대 비민주주의 국가	198
합 계	353

*전사자가 1,000명 이상 있었던 무력충돌만을 전쟁으로 간주함.

(표 2)와 (표 3)은 <http://www.hawaii.edu/powerkills/NH.HTM#SUPPLEMENT>에서 옮김.

EU 27개 회원국이 모두 인권을 가장 존중하며, 자유 시장 경제체제이며, 국제적 약속을 잘 지키는, 성숙된 민주주의 국가들이라는 공통적 동질성(同質性) 때문에, 5억 사람들이 인종과 언어, 문화, 관습, 빈부(貧富) 차의 장벽을 극복하고 평화공존과 공영(共榮)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6. 한반도에서의 평화(平和) 공존(共存) 공영(共榮)

인구 5,000만의 대한민국은 인권지표로 보나 민주주의 지표로 보나, 또는 경제력으로 보나 평화를 지향하는 선진 모범국가이다. Rummel의 역사적 통계와 EU의 형성과정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한반도에서 남북의 주민이 평화(平和)스럽게 공존(共存)하고, 협력을 통해서 공영(共榮)하려면, 먼저 북한 땅에 인권을 존중해서 국제협약 ICCPR-ICESCR을 준수하는 민주주의정부가 들어서야 한다. 이는 국제협약 ICCPR-ICESCR를 어김으로써 국제사회를 기만(欺瞞)하고, 우리 민족 구성원에게 거짓말을 해가며, 동족을 살해하고 투옥하며 굶어죽게 하면서, 불법선거운 부자(父子)가 세습까지 하면서, 60년간이나 이어온 현존 김일성-김정일 독재정권의 소멸(消滅)이

선행(先行)되어야 함을 뜻한다. 남북의 주민이 단합(團合)해서 한반도에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는 것은 또 그 다음의 일이다.

북한에 진정한 뜻의 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서서 대한민국과 더불어 EU와 같은 공동체를 형성한 다음은, 진화(進化)의 과정을 거쳐서 경제의 균형적 발달과 문화의 동질화를 이룩하고, 적절한 시기에 남북정부의 합의를 거쳐서, 공정자유선거로 인구에 비례하는 통일 입법의회 대의원을 선출하고, 헌법제정-대통령 선출로 하나의 민주국가를 세우면 된다. 물론 압록강 너머의 중국과 같은 외세의 간섭을 사전에 배제(排除)하여야 한다.

남북한사이에 삶의 질과 문화의 양극화가 심화되기 전인 1948~1954년에, 한반도 전역에서 공정자유선거에 의한 통일의 기회가 세 번 있었다⁽¹²⁾. 김일성이 이때 공정자유선거를 거절한 것은, 외세의 간섭이나 외국군이 있어서가 아니라, 공정자유선거는(소련군의 지지로 얻은) 김일성의 권좌(權座)를 계속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한반도 북반부에서 부정선거에 의하여, 부자(父子)가 세습하면서, 60년 간 절대 권력을 유지하여왔다. 그리하여 인권지표가 193개국 중 193위이고, 민주주의지표가 167개국 중 167위인, 세계 최악의 반(反)인권 반(反)민주 국가를 만들어 놓았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연구소(The Albert Einstein Institution)의 Gene Sharp 박사는 From Dictatorship to Democracy라는 그의 연구보고서에서⁽¹³⁾ ‘독재자는 자신을 권좌에서 몰아낼 가능성이 있는 선거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독재자는 자신의 힘이 충분할 때는 상대방을 힘으로 굴복시킨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대화를 하되,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거짓 약속이라도 한다’라고 하였다.

실제로 김일성은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자, 외세(外勢)인 소련으로부터 T-34탱크와 yak전투기, ‘따발총’을 받아서 군사력의 우위(優位)를 선점하자, 한반도 전체인구의 2/3 이상이 거주하는 남한에서, 유권자의 90% 이상이 투표장에 나가서, 공정자유선거로 수립한 대한민국을 상대로 반역 전쟁을 일으켰다. 그리고 남한에 대한 무력정복에 실패하자, 미소를 띠며 남북 간의 대화에 응하였다. 그리고는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등의 미사여구(美辭麗句)로 중립국이나 UN이 감시하는 공정자유선거를 배척하고, 한반도에서의 전쟁재발 방지에 절대적 기여를 한 한미군사동맹의 해체를 주장하여 왔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선군정책으로 압도적 군사력의 우위를 선점하면서 제2의 기습남정(奇襲南征)을 준비하여왔다.

1953년 휴전협정에 조인해놓고, 과거의 동료들을 숙청한 다음, 1968년 김신조 등의 정규군 게릴라부대를 휴전선 넘어 보내서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하려 하였다. 1972년에는 김영주-이후락의 7.4남북공동성명을 하면서 휴전선 밑에 땅굴을 뚫으며, ‘우리는 하나’라고 하면서 1987년 중동과객 근로자들이 탄 KAL 858편 여객기를 김현희로 하여금 공중 폭파시켜서 동남아 바다에

수장시켰다. 1992년에 남북비핵화선언을 하고는 다음 해에 NPT를 탈퇴하고 핵무장을 선언하였다. 돈을 들고 평양을 찾아가서 이루어낸 김대중-김정일의 회담에서 '화해'하고 '평화를 약속'했다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노벨상까지 받았는데, 김정일은 그 후 원자탄을 지하에서 터트렸으며 장거리 미사일을 동해에 쏘아 올렸다.

미군을 한반도에서 철수시키기 위해서는, 중국을 앞세워 외교적으로 설득하고, 미국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과 원자탄으로 위협한다. 남한에 있는 김정일 동조자로 하여금 '북한은 주적(主敵)이 아니니 미군을 철수시키라'라는 여론을 형성케 한다. 국가보안법을 없애고 남한 내에서 김정일 동조자를 양산(量産)해서 평상시 법(法)질서의 교란을 하고, 전쟁 때는 후방교란-요인살해의 역군으로 이용한다. 물론 이들은 전쟁이 끝나면 토사구팽(兔死狗烹)의 대상이다. 그리고 이들을 이용해서 남한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인도적 대북원조'를 김정일 정권에 검증(檢證)절차 없이 하게 한다. 따라서 김정일은 보다 많은 재원(財源)을 군비강화에 쓴다. 미군이 철수하면 선군정책으로 얻은 비대칭적(非對稱的) 우위의 군사력을 동원해서, 기습공격으로 단시간 내에 남한 전체를 유린한다. 중국은 한반도가 궁극적으로는 자신들의 위성국가 되는 것을 바라며, 일본과 같은 친서방(親西方) 통일독립국가가 한반도에 생기는 것은 그들의 국익에 배치(背馳)되는 것이다.

북한 땅에 세계 최악의 독재정권이 있는 한, 한반도의 평화는 남북 간의 군사력의 균형을 유지하고, 기습공격의 지속적 감시와 예방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7. 맺는 말

민주주의는 지구상에서 전쟁과 정치적 학살(democide)과 아사(餓死)를 방지하는 최선의 장치이며, 인권의 보장은 민주주의의 필요조건(necessary condition)임을 역사와 현실이 입증하고 있다.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며, 국민의 뜻에 역행하는 독재자는 부정선거로 권력을 유지하며, 국민과 국제사회를 기만(欺瞞)한다는 것이 사회과학적 연구와 통계에 의하여 밝혀졌다. 독재자를 납득시키는 것은 오로지 힘뿐이며, 공존과 공영(共榮)을 지향하는 협력은 인권을 보장하는 민주국가들 사이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Freedom House의 인권지표와, Economist지의 민주주의지표, 발행부수가 3,000만부 이상의 Parade지의 조사결과⁽¹⁴⁾와, 국제사회의 뜻을 공식적으로 대표하는 UN총회 결의는 모두 북한의 김일성-김정일 정권이 세계 최악의 독재정권임을 확인하고 있다.

김일성-김정일 부자(父子)는 전쟁 - 정치적 학살-굶주림으로 이미 수백만의 동족(同族)을 살해한 인권범죄(人權犯罪)자들이며, 동족을 적(敵)으로 삼은 반역자들이다. 한반도 역사상

어느 외세도 우리 민족을 이처럼 시달리게 한 일이 없다. 21세기 현재에도 북한 땅에서 20만의 북한주민을 생지옥 같은 정치범수용소에 가두어두고 있으며, 핵심-동요-적대계층으로 분류 차별 관리하는 신분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자주(自主)’를 외치면서, 평양을 방문한 고이즈미 일본수상에게는 일본인 10여명의 납북(拉北)사실을 확인하고 사과하면서, 북한에 아직도 억류 되어 있는(6.25 당시의) 국군포로, 사변 후 끌려간 남북자들은 남송(南送)은 고사하고, 생사의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인권 상황(狀況)에 관한 실체(實體)를 교육, 홍보, 외교를 통해서 남북의 동포와 세계인에게 알리는 일은 (후손들에게 대한)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북한주민의 인권회복은 그 자체가 선(善)이고, 지구인의 지상가치(至上價値)의 구현(具現)이다. 북한 땅에서의 인권보장은 민주화의 필수(必須)조건이며, 민주화된 북한만이 대화·협력의 대상이고 남북통일의 북측 주체(主體)가 될 수 있다.

김정일의 남정(南征) 의지와 맞물린, 대량살상무기와 그의 운반수단인 장거리 미사일은 우리 스스로의 인권과 안보를 위협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의 본토를 겨냥함으로써 한반도로부터 미국군의 철수를 관철시키는데 지렛대의 역할을 하고 있다.

2012년은 김일성 탄생 100주년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하였던 바와 같이) 한미연합사(韓美聯合司令部)가 해체되고,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이다. 미군이 일단 철수하면, 한반도에서 60년 간 평화에 절대적 기여를 하여온 남북 군사력의 균형(均衡)이 깨진다. 막강한 화생방(化生放) 전력과 10만의 후방침투용 특수전력을 포함한 120만의 정규군을 지닌 김정일은 제2의 기습남침(奇襲南侵)을 주저(躊躇)할 이유가 없다. 대한민국에는 6.25때 보다도 더 많은 부역(附逆)가능성이 있는 김정일 추종자들이 있으며, 압록강 바로 너머에 포진하고 있는 (김일성군대의 혈맹(血盟)이었던) 중국군은 군사적으로는 북한 땅에 있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패권주의의 중국은 우리에게서 중립국이 아니며, 무해(無害)한 민주주의국가도 아니다.

동족상쟁(同族相爭)을 예방하는 길은 (1) 우리의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2) 한미군사 동맹을 강화하고 (3) 중국 - 북한의 핵(核)전력에 대칭적(對稱的) 전력(戰力)을 한반도에 구축(構築)하는 것이다.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는 데 두 개의 선택지(選擇枝)가 있다.

하나는 평화적 방법이다. 즉 (1) 북한 땅에서, 남한이나 EU국가 수준의 인권보장과 개방을 포함하는 민주화가 선행되어야 한다(표 3). 그 후에 (2) 남북의 민주정부가 교류 협력을 통해 시장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문화적 동질성의 회복을 적정수준까지 달성한 다음(표 2), (3) 남북이 UN의 보장 하에 공정자유선거와 민주적 절차를 거쳐 통일정부를 수립하는 것이다.

또 하나의 선택은, (1) 모(某) 대학교수가 간접적으로 지적인 바와 같이, 김정일의 남침군대에 굴복하는 것이다. 이는 5,000만의 국민이 공정자유선거로 수립한 한반도 유일합법정부와 인권을

보장하는 모범적 선진민주국가가 한사람의 민족반역자 앞에 항복하는 것이다. (2) 그는 투옥과 처형으로 남한의 지식층 - 지도층 인사 수십만을 “청소(淸掃)”하는 것은 물론이고, 남한의 동조자(同調者)들도 (박헌영, 이승엽 등처럼) 토사구팽(兔死狗烹)할 것이다. (3) 그리고 한반도 전체를, 1인당 GDP(ppp)가 남한의 1/15이고⁽¹⁵⁾, 인권 부재(不在)인 현재의 북한과 같은 나라로 만들 것이다. (4)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전체가 (압록강 바로 너머) 중국에 의존하는 가난한 위성국가로 전락(顛落)할 것이다.

김정일 지배 하의 현재의 북한과, 논리적 대화나 선의의 원조를 통해서, 평화적 공존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큰 착각이다. 유비무환의, 실질적으로 강력한 우리의 국방력과 기습공격에 대한 확실한 사전 대비를 통해서만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이웃이다.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인권은 피를 흘려서라도 보호해야 할 소중한 가치이다. 6.25의 60주년과 국치(國恥)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모두가 자문(自問)과 자성(自省)을 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1.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http://www.udhr.org/udhr/default.htm>.
2.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al, Social and Cultural Rights.
<http://www2.ohchr.org/english/law/ccpr.htm>.
<http://www2.ohchr.org/english/law/cescr.htm>.
3. Korean Famine Toll: More Than 2 Million. The New York Times. August 20, 1999.
<http://www.nytimes.com/1999/08/20/world/korean-famine-toll-more-than-2-million.html?pagewanted=all>.
4. 통계청. 2010. 경제활동인구조사 산업별계절조정취업자.xls <http://www.kosis.kr>.
5. Freedom House. 2009. Freedom in the World 2008.
<http://www.freedomhouse.org/template.cfm?page=363&year=2008>.
6. The Economist. 2008.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s Index of Democracy 2008.
<http://graphics.eiu.com/PDF/Democracy%20Index%202008.pdf>.
7. European Union http://en.wikipedia.org/wiki/European_Union.
8. Copenhagen Criteria http://en.wikipedia.org/wiki/Copenhagen_criteria.
9. Rummel R. J., May 2005. Never Again: Ending War, Democide & Famine Through Democratic Freedom. Lumina Press.(ISBN-10: 1595261370)
10. Rummel, R. J., 20th Century Democide.

<http://www.hawaii.edu/powerkills/20TH.HTM>

<http://www.mega.nu:8080/ampp/rummel/20th.htm>.

11. Korean War: battle casualties. [Art]. Retrieved March 21, 2010, from Encyclopedia Britanica Online: <http://search.eb.com/eb/art-67418>.
12. 김호징. 2007. 세 번 있었던 평화통일의 기회.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3: 73~84. (ISSN 2005-05260)
13. Sharp, Gene. June 2003. From Dictatorship To Democracy. Boston: The Albert Einstein Institution. (ISBN: 1-880813-09-2)
14. Parade. 2008. The World's Worst Dictators <http://www.parade.com/dictators/2008/>
15. List of countries by GDP(ppp) per capita.
[http://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GDP_\(PPP\)_per_capita](http://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GDP_(PPP)_per_capita).